의안번호	제426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12월 20일 (제316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11월 28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선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

발의연월일 : 2012년 11월 28일
발 의 자 : 장선배, 노광기, 김양희, 박종성, 손문규, 최미애, 최병윤

1. 제안 사유

○ 2006. 9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개관이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센터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방안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및 도내 복지전문가들의 간담회를 통해 센터 기능 재정립(안)이 도출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기능을 개정하고, 운영위원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 변경 (안 제3조)

- 일부단체와 중복 및 불합리한 기능 변경, 통합 및 삭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
    ⇒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대상자가 아닌 교육 내용으로 규정)
  -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으로 통합

-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변경)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 법인 관련 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
  ⇒ 관련조항 삭제 (센터의 고유영역으로 보기 어려움)
-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기능 추가(신규)

○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 위원을 위원장 포함 9명에서 13명으로 **4명 확대함.**(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해당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5.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
6.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7.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자가 된다.

1.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
2. 수탁자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
4. 입주기관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내의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지원 및 도내 민간복지에 관한 협의·조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교육 5.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6.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 및 자문 7. 충청북도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8. 사회복지법인 관련시설 또는 자활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 9.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제3조(센터의 기능)..... .....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 (삭제) 5.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 · 컨설팅 6.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 (삭제) (삭제) 7.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3인 이내 ....

③ 위원장은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자가 된다. 1.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 2. 수탁자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자 3. (생략) 4. (생략)	③…… …… 1. …… 5인 이내의 자 2. …… 5인 이내의 자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